제709차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결과

□ 안 건 명 : 양재근린공원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

□ 심 사 일 : 2013. 7. 16

□ 사업개요

ㅇ 용 역 비 : 275,418천원

ㅇ 용역기간 : 착수일로부터 210개월

ㅇ 사업규모 : 빗물저류조 설치 V=7,550㎥

□ 심사결과 : 적 정(조건부)

심사항목	심 사 내 용
1. 용역의 필요성 [자체시행 47개 공종대상여부} □ 대상 □√미대상	2001년, 2010년 침수발생 지역인 서초구 양재2동 지역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여, 집중호우시 우수유출량 저감 및 주변 저지대 주택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용역으로 기술용역 시행필요.
2.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- 개략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- 소요 기술인력 산정의 적정성	○ 용역비 조정 : 275,418천원 → 218,812천원 (감 56,606천원, 용역비 대비 -20.5%) [심사내역] ○ 설계비 조정 : 229,918천원→ 180,841천원 - 기본 및 실시설계발주 →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 발주 통합요율 적용 (행정2부시장 방침 제10109호, 2011.9.5.) - 설계난이도 및 비교설계 유무 등 감안 -10% 감적용 - 설계요율 : 3.08×1.4=4.31% → 3.77(통합요율)×0.9=3.39% ○ 측량비 조정 : 3,281천원 → 1,698천원 - 지형측량 작업량계수(P) 조정 : 1.8 →0.9 - 종,횡단측량 : 하천측량 → 수도노선측량 적용 ○ 용역손해배상공제료 조정 : 2,344천원→1,550천원 ※ 건기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참조(기본설계분 감액)
3. 과업의 내용, 범위의 적정성 등 기타 검토의견	ㅇ본 용역의 대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정 대가를 적용하고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비 집행 및 정산관리 등에 철저를 기할 것 ㅇ용역 준공 후 지반조사 결과를 서울시(지리정보담당관)에 제출할 것 ㅇ지반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여부 등을 확인 검토할 것.
4. 리스크 관리항목 적정성 - 용역지연·중단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 - 용역비 증가요인의 관리대책 적정성	적정